수원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6-21호

2026년 제1회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분야, 총 7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행정·법무	5명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인턴02		2명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가.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근로자 (공무원 아님)

○ **(계약기간)** 2026. 4. 13. ~ 2026. 9. 12. (5개월)

○ **(보 수)**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 **(근무시간)** 09:00 ~ 18:00 (주 5일, 40시간)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붙임 참고)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행정·법무	○ 출입국관리 행정업무 보조 – 민원안내, 체류·사증 민원접수 및 행정업무 지원, 신청서 등 자료 전산 입력 등 – 조사 및 출입국사범 처리 행정업무 지원
인턴02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②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는 1인당 2회까지로 제한

※ 다만, 횟수제한 시행 이전('23~'24년)에 2회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3회차 허용

※ 동일 근무기관에 재채용 금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③ 성별,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④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각 호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

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가산특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법정 가점은 평택출장소 지원자에게는 해당사항 없음 (채용예정인원 4명 이하)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3.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응시원서, 청년인턴지원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3. 20.(금) 예정

- 청년인재DB(info.2030db.go.kr), 법무부 홈페이지 및 기관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 및 2차 면접일정 등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면접시험에서 활용

나. 2차 시험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참여의지 및 진로연계성,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정책제안의 참신성·실현가능성,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공직에 대한 책임감 및 윤리의식

다. 최종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채용예정 인원)

4.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6. 3. 3.(화) ~ 3. 16.(월)

○ 원서접수 : 2026. 3. 12.(목) ~ 3. 16.(월) 09:00 ~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6. 3. 20.(금)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26. 3. 23.(월) ~ 3. 25.(수)

○ 면접시험일 : 2026. 3. 31.(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6. 4. 7.(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청년인재DB(www.2030db.go.kr),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에 공고와 함께 개별 통보 예정

※ 채용공고는 청년인재DB(www.2030db.go.kr),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청년인재DB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청년인재DB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3. 12.(목) ~ 3. 16.(월) 09:00 ~ 18:00

○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청년인재DB를 통해서 접수

나. 제출 서류

○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필수 제출)

○ 응시원서 및 청년인턴지원서 각 1부(필수 제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필수 제출)

※ 고용보험 기록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필수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ㅇ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별지 서식 제8호)
ㅇ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포함, 필수 제출)
ㅇ 정책제안서(필수 제출, 별지 서식 제4호)
ㅇ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6.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운영지원팀(담당자 : 김예은, ☎ 031-695-3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원출입국·외국인청(5명), 평택출장소(2명)

주요업무	○ 민원안내, 체류·사증 접수 및 행정업무 지원, 신청서 등 자료 전산 입력, 각종 서류 정리 등 ○ 조사, 출입국사범처리 행정업무 지원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청년인턴 기간 중 직무와 함께 정책참여 활동이 병행됨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친절),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무분야 역량)** -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국경관리 등 국익과 외국인 인권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및 현장 업무 수행 능력

응시 자격 요건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각 호의 취업제한 대상,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으로 **수원출입국외국청 지원자**만 해당) ○ 사회형평가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별지서식 제1호>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 접수담당기재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연락처
			* 핸드폰 번호

☐ 제출란에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연번	서류명	비고	제출
1	응시원서 1부	별지2호 서식	
2	청년인턴 지원서 1부	별지3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5호 서식 (동의시 ✓ 표시 필수)	
4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필수제출(별첨 참고)	
5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6호 서식	
6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7호 서식	

※ 정책제안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인/서명)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1. 지원분야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2.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도로명)	(우)				
휴대전화		이메일			
3. 가산요건					
※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 □ 취업지원대상자(5%) □ 취업지원대상자(10%) □ 사회형평대상자					
4. 희망부서					
1순위		2순위		3순위	

4.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중앙행정기관명	실제 근무지	근무기간	합산 기간
예 : 산림청	*국립수목원*	*2025.3.4.~2025.8.31*	*6개월*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1.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가산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1　　채용분야 : 행정・법무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해당란에 ✔ 표시

⑦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 '2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근무 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상 취득일~상실일 기준으로 산정)

<별지서식 제3호>

청년인턴 지원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 -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
◎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
-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출신학교, 자격증, 시험(어학 등)성적 등은 언급하지 말고 행동과 경험 중심으로 작성
◎ 문제 해결 경험
- 일상생활, 학교, 아르바이트,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 서술 -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
◎ 소통 및 협업 능력
-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
◎ 기대하는 점 및 각오
- 인턴십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

○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
- 학력, 자격증, 시험성적 등 작성 금지
- 작성 금지사항을 기입할 경우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별지서식 제4호>

정책제안서

지원분야		성 명		연락처		e-mail	

제 목	청년이 보는 00 정책 ※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사업·제도(예: 복지, 노동, 산업, 금융 등)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
제안 배경 및 문제점(현황)	
개선안 또는 정책대안	
예상 효과	

○ 정책제안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

*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취업지원대상자·사회형평대상자 등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성 명 : (서 명)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제8호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첨] 고용조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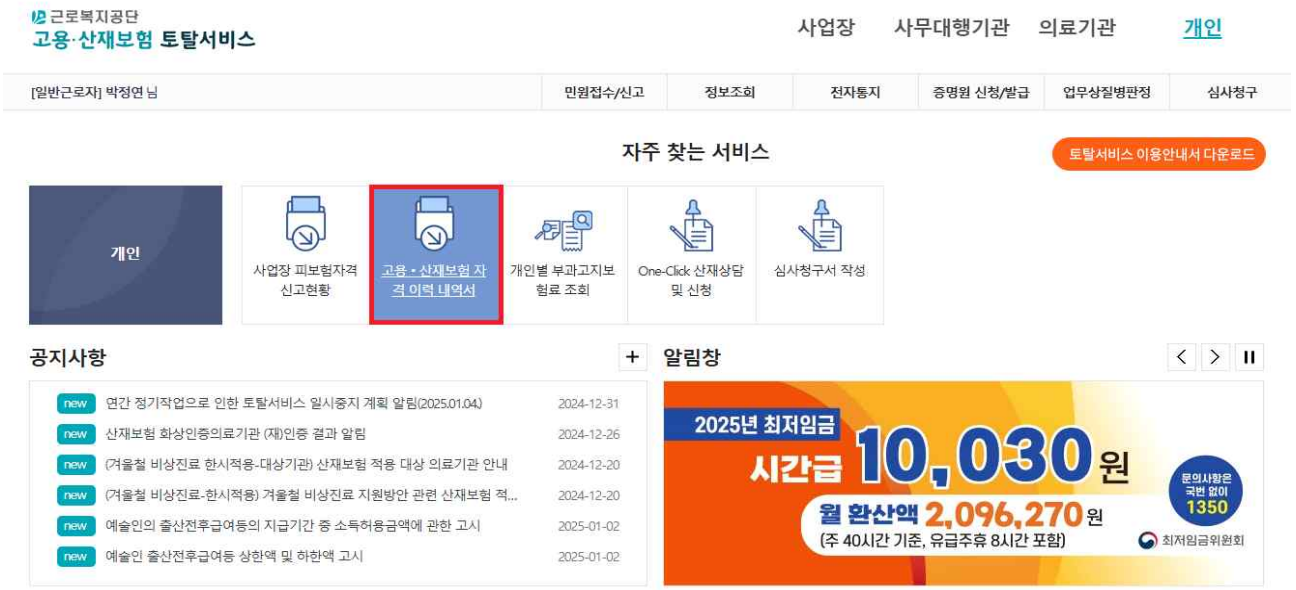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②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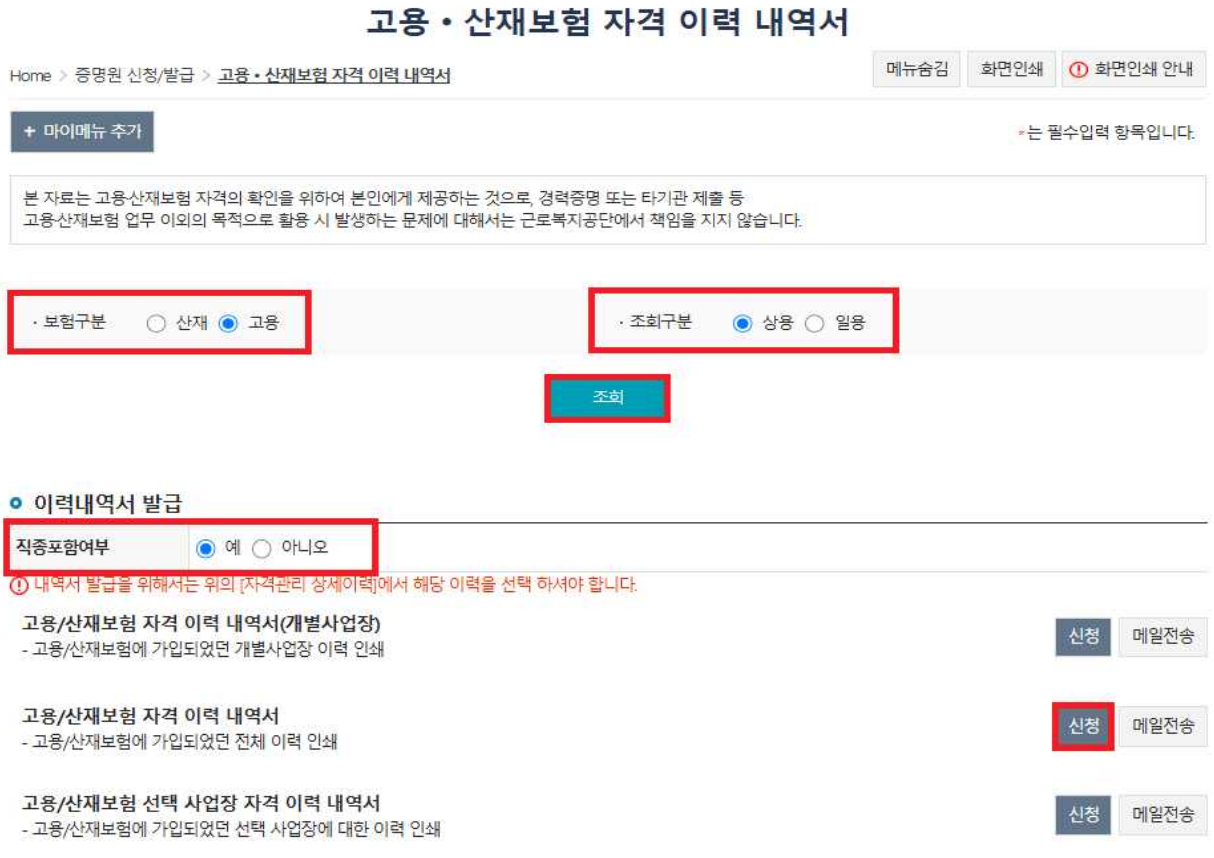


③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④ 보험구분 중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중 ‘**상용**’ 선택 → 조회

⑤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인쇄)**’ 신청 선택



참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예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피보험자용)

발급번호	0000-2025-01 55	발급일자	2025년 01월 03일	접수번호	0000-2025-7 J
신청인	성 명	박	생년월일	년 10월 30일	
조회기간	전체 (조회기간 총 2개 이력 중 2개 이력 선택 발급 요청)				

일련번호	직종명(코드)	사업장 명칭	취득일/전근일	상실일	비고
1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025)	국무조정실	2024-09-02		근로자
2					근로자

※ 본 자료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발급 증명원의 진위여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조회-증명원 진위확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1월 03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